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215호

나. 발 의 자 : 김정 의원 외 13명(찬성자 2명)

다. 발의일자 : 2024년 10월 16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2. 제안이유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체육시설내에서의 과도한 음주·흡연·취사행위 등으로 인한 건전한 체육활동 분위기가 저해되고 시설 이용이 불편하다는 불만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공공체육시설 내 음주·흡연·취사 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사용·이용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30일의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2항)

나. 공공체육시설 사용 허가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사용 허가의 제한도 위임사무에 추가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제1호)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체육시설 내에서의 과도한 음주·흡연·취사행위 등으로 인한 건전한 체육활동 분위기가 저해되고 시설 이용이 불편하다는 불만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내 음주·흡연·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나. 개정의 필요성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체육시설 이용 중 과도한 음주·흡연·취사행위 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 사용자에 대해 시설사용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제한 및 공표 제재)하도록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음.

다. 사용허가의 취소(안 제5조의3)

- 안 제5조의3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사용·이용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30일의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금지하고, 관련 업무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위임사무에 추가하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3(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이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u><신 설></u>	제5조의3(사용허가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라 사용·이용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30일의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u>
제23조(사무의 위임) ① 이 조례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	제23조(사무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한다. 다만, 제3장에 따라 법인·단체·개인 등에 위탁하는 체육시설과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에 관한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및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u>회원모집·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u> 2. ~ 12. (생략)	1.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및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u>회원모집·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 제5조의3에 따른 사용허가의 제한</u> 2. ~ 12. (현행과 같음)
--	---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내에서 과도한 음주·흡연·취사행위를 행할 경우, 일정기간 이용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보임.
- 현행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침익적인 조례’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 동 사안의 경우, 체육시설의 이용에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취소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며,

상위법률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도록’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시립체육시설의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일정기간 사용을 제한하는 동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 판단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및 교육청에 선량한 풍속 저해자에 대한 일정기간(30일간)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는 부산, 대구, 제주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음.

의안번호
2215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김경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 10. 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제안이유〉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체육시설 내에서의 과도한 음주·흡연·취사행위 등으로 인한 건전한 체육활동 분위기가 저해 되고 시설 이용이 불편하다는 불만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공공체육시설 내 음주·흡연·취사 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				
	〈주요 입법 요지〉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사용·이용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30일의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제2항)				
추진경과	○ 2024. 10. 16. 조례안 발의(대표 발의 : 김경 의원) - (발의자) 김기덕, 봉양순, 송도호, 이병도, 이용균, 최기찬 의원 등 13명 - (찬성자) 문성호, 이종환 의원 2명				
부 서 검 토 의 건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및 교육청에 선량한 풍속 저해자에 대한 일정기간(30일간) 사용 제한 등을 권고하여, 부산·대구·제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시립체육시설의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풍속저해자에 대한 제재는 필요한 사항이므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함				
대응방안	○ 해당없음				
상 임 위 처 리 결 과	○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				
향 후 계 획	○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체육정책과	팀장	남규하(☎2133-2677)	담당	방준홍(☎2133-2678)